

**'92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3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2. 11. 26(목) ~ 11. 28(토)까지 (3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호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감사반, 대상기관별 일시, 장소, 방법등 기타)

위원회별	감사위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기간	감사 장소	감사 방법	사무 보조 공무원	비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 홍상기 간사 : 이용주 위원 :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운중, 임창수 정준탁	도시정비국 건설국	'92.11.26(목) 09:00-17:00 '92.11.27(금) 09:00-17:00 '92.11.28(토) 09:00-17:00 감사실 별로 필요시 감사시 간 연장	영등포 구청 감사실	- 보고  - 자료 확인  - 질의 답변	지방행 정서기 박봉주  지방행 정서기 최광목 속기사 김명옥	필요시 현 장 확 인 과 동 사 무 소 에 대 한 확 인 감 사 실 시  '92.11.28 15:00 감사 결과 강 평

##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가. 도시정비국

소 관 별	사 항 별	비 고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길4동 재개발환지청산금 상환방법 변경요구에 관한 사항</li> <li>○신길4동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li> <li>○신길2동 장훈중고교 여상 건물이 무허가 임에도 방치한 이유 및 법적근거?</li> <li>○신미아파트 관련 예산 책정 여부(용역대금 1,000만원)</li> <li>○무허가 건물 철거관계</li> <li>○주거환경개선 지역 대림 2구역 진행여부</li> <li>○대형빌딩 옥상에 골프 연습장이 설치되어 주민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허가해 준 일은 있는가?</li> <li>○박사원 A.P.T사기사건 관련 예산지출 및 소송 진행 상황</li> </ul>	
도시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왕건설 대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자격이 없으면서도 위원으로 위촉된 이유?</li> <li>○옥외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너무 강제적이기에 업소피해가 심함</li> <li>○돌출간판 설치기준 및 1업소당 부착 할 수 있는 간판의 수</li> <li>○옥상 네온싸인 허가 수수료 관계</li> <li>○상업광고 심의기준인 광고심의 위원회에 광고업자가 위원으로 있음</li> <li>○영등포역앞 유공광고탑 적정 여부</li> <li>○옥상광고 대집행예산 집행여부</li> <li>○구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유명 무실한데 존폐여부</li> <li>○광고물 심의 위원회 금년도 개최 횟수</li> <li>○도시계획구역은 설정하고 시행치 않을 경우 해제시기?</li> <li>○'92년도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계</li> <li>○'92년도 형질변경 신청 접수현황</li> <li>○상업광고 허가 현황</li> </ul>	
지역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버스 허가건수 및 주간에 정차해 있는 차의 시간대별 운행 여부 확인하는지?</li> <li>○영등포6가 버스정류장과 토큰판매소 거리 관계</li> <li>○영3동 시립노인정앞 컨테이너박스를 창고로 쓰고 있는 관계</li> </ul>	

소 관 별	사 항 별	비 고
지역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차가 방치되고 있음</li> <li>○과태료 조정징수 실적이 44% 정도인데 징수방법 개선 방안은?</li> <li>○주민의식상 과태료는 납부치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개선방안이 있는지?</li> <li>○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li> <li>○63빌딩 백화점 주차장 시설에 있어 유·무료로 혼용되는데 전부 무료화 할 수는 없는가?</li> <li>○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은?</li> <li>○관내 택시회사에 위장 지입차가 있는가?</li> <li>○우리관내 통과 버스 노선수</li> <li>○접치기 운행 노선수</li> <li>○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및 개최 회의록 관계</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허가관계</li> <li>○신축건물의 주차장을 용도변경 없이 점포로 사용하는데 사후 조치 관계</li> <li>○신축건물 도로에 담장설치로 차량소통에 불편 초래 사항</li> <li>○미준공건물(위법건물)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배 관계</li> <li>○준공검사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 열관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열관리 분야를 확인하는 것은 잘못 아닌지?</li> <li>○옥탑, 옥외계단, 위반은 누구 책임인가?</li> <li>○관급 공사인 노인정등이 부실한데 그 대책은?</li> <li>○건설회사가 부실공사하든 관에서 감독소홀 관계에서 기인된 것임</li> <li>○준공계 타의, 자의 반려 관계?</li> <li>○건축 감리사에 대한 교육 방법은?</li> <li>○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li> <li>○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재조사 확인하는가?</li> <li>○건물 옥상 골프장에 대한 허가 및 조치는?</li> <li>○진정한 부분 시정없이 취하원 제출하면 준공 검사를 해주는가?</li> </ul>	

소 관 별	사 항 별	비 고
지 적 과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구성관계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개최 현황 관계	

나. 건설국

소 관 별	사 항 별	비 고
건설관리과	○노점단속을 용역회사와 계약 관리하는가? ○계속해서 용역을 주어야 할 상황하에서는 늘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개선 대책은? ○가로판매점에서 판매 품목은 무엇이며, 조치행위 판매점 단속은? ○노점상들이 파라솔까지 설치 통행에 불편한데 단속대책은? ○도림2동 마을금고위 도로개설 보상금 및 '93년도 예산반영 여부? ○대림동770-57~750 소방도로 개설관계 보상은 다 완료 하였으나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이유? ○'92년도 예산용역비로 정비한 내역은? ○신길근린공원 '92년도 예산책정 하였는데 예산서에 없는 이유? ○영등포역앞 토크박스가 정류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관계	
토 목 과	○경계블럭 내구년도 및 압축강도 관계 ○보도에 화강석으로 교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도상 주정차로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있는 바 파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가? ○도로굴착 허가 및 굴착후 복구공사 하자 발생시 시정 기관과 복구공사에 대한 대책은? ○동절기 제설작업 실시 계획은? ○작업일시 작성자 및 소모품대장 관리 책임 관계 ○관급자재 수령업체(우신전기)에서 수령한 수불대장 관계(유,무)	
하 수 과	○하수도 준설 각동별 작업일지 제출요 ○준설시 수익성이 없는 곳은 준설 안하는데 대책은?	
공원녹지과	○신길근린공원 본예산 5억 책정하고 업무추진 불이행	
도 립 2 동	○연안빌딩 옥상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골프장으로 사용하는데 보고치 않은 이유?	
신 길 4 동	○보안동(관급자재) 수불대장 부실 기재 관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도시정비국 건설국</p>	<p><b>제 목 : 감사수감 자료준비 미흡 및 수감태도 불량</b> (현황 및 문제점) 감사자료는 감사당일 09:00까지 감사위원에게 감사 자료를 배부하여야 하나 각국 공통사항으로 기본적인 감사자료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음. 피수감자 질의답변 불성실 (조 치) 향후 수감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p>	
<p>주 택 과</p>	<p><b>제 목 : 무허가 건물 단속 소홀</b> (현황 및 문제점) 항측에 적출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다음번 항측에 계속 적출이 되고 있으며, 이는 철거후 사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 치) 무허가 건물 철거시 완전철거를 하여 재발생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p>	
<p>주 택 과</p>	<p><b>제 목 : 무허가 건물 단속 형평성 결여</b> (현황 및 문제점) 사립학교 장훈 중·고등학교 및 장훈여상의 학교 건물이 수천평의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커녕 계속 증축을 해도 이를 영등포구청이 방관하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의 불법행위는 경미 하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조 치) 무허가 건물 단속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어떠한 위법건물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할 것.</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주 택 과	<p><u>제 목 : 신미A.P.T 관리처분 계획 지연</u></p> <p>(현황 및 문제점)  신길5동 신미A.P.T의 입주자들은 입주금액을 완료하고, 입주해 있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도록 관리처분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입주자들의 원성이 많음.</p> <p>(조 치)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조속히 확정 장기 민원을 해결할 것.</p>	
도시정비과	<p><u>제 목 : 광고물 심의위원 위촉 부적정</u></p> <p>(현황 및 문제점)  광고물 제작업자가 심의위원에 위촉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심의에 있어서 로비등 문제점이 도출 된다고 사료됨.</p> <p>(조 치)  광고물 제작업담당 주무과장은 심의에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광고물 제작업자 심의위원을 해촉토록 할 것.</p>	
도시정비과	<p><u>제 목 : 예산 편성 부적정</u></p> <p>(현황 및 문제점)  '92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분류기호 5301(세항)산 출기초 옥상광고 대집행에 따른 용역비 6백만원 기술인부 (로프트는 인부)임 5백만원 경우는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전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93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p> <p>(도 출)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기초 조사를 정확히하여 탁상에서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p>	
지역교통과	<p><u>제 목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조정 징수 실적 저조</u></p> <p>(현황 및 문제점)  1.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44.5% 체납이 56.5%로 세 외수입 증대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지역교통과	<p>2. 주차금지 표지판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곳은 어디어디이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이고 내년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사료됨.</p> <p>(조 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수실적 부진은 서울시 전체의 공통된 문제로 5년 이내의 모든 자료를 병산하여 자산 압류조치까지 해서 징수실적 거양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li> <li>2. 향후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장소를 잘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li> </ol>	
지역교통과	<p><u>제 목 :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u></p> <p>(현황 및 문제점)</p> <p>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체납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세외 수입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p> <p>(조 치)</p> <p>주무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p>	
지역교통과	<p><u>제 목 : 노상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소홀</u></p> <p>(현황 및 문제점)</p> <p>노상주정차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구획선 폭이 일부 규정과 상이하고 구획선의 차도에 이중 불법주차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였음.</p> <p>※첨부 : 관련사진 각각 1매.</p> <p>(조 치)</p> <p>향후에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p> <p>※행정조치 공문을 11월중으로 발송하고 이용주의원에게 행정조치 사항 보고기로 하였음.</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 축 과	<p><u>제 목 : 건축물 지도감독 소홀</u></p> <p>(현황 및 문제점) 건축사와 감리 서류만 믿고 허가 및 준공검사를 하여 줌으로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함.</p> <p>(조 치) 건축허가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착공시 기초터파기하고 콘크리트 타설전 현장을 답사할 것.</p>	
건 축 과	<p><u>제 목 : 건축 허가시 시공자와 건축주 공동책임 각서에 관한 건</u></p> <p>(현황 및 문제점) 건축허가 제출시 건축사가 시공자와 건축주 공동각서를 작성하여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책임을 면키 위하여 건축주만이 각서를 제출하는 사례로 건축주만 책임을 전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임.</p> <p>(조 치) 건물 건축시 건축주 및 시공자의 각서를 받아 건축 위반시 시공자도 건축주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할 것.</p>	
건 축 과	<p><u>제 목 : 허가 건축물 현장지도 감독 철저 및 건축 규제 완화</u></p> <p>(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을 무시하고 위법의 소지가 많다고 임의로 건축 허가 옥탑등을 제한하여 구민에게 불이익을 준사례.</li> <li>2. 관내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으로 장기 미준공건축물 792동이 발생케 함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지도 감독 불충분 설계 감리사의 지도감독 불충분 등이 원인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요함.</li> </ol> <p>(조 치) 피수감자 건축과장은 위 1,2항을 시인 확인서를 제출한 바,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할 것.</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 축 과	<p><b>제 목 :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현황조사</b></p> <p><b>형평성 결여</b></p> <p>(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 조사는 일부 건축만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민원의 원성과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p> <p>(조 치)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된 것을 전수 조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추후 전수조사 여부를 확인할 것.</p>	
건 축 과	<p><b>제 목 : 일반 건물 옥상위 무허가 골프연습장 설치</b></p> <p>(현황 및 문제점)                      일반 건물 옥상위에 영등포구내 소수 지도급 인사들이 무허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이 오래전부터 설치가 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나 철거조치하지 않고 있음.</p> <p>※첨부 : 일반건물 옥상 골프연습장 현황 보고서 1부.</p> <p>(조 치)                      각동별로 철저히 확인하여 즉시 고발조치하고 철거되어야 하며 추후 위 사례가 재발생시는 관계공무원 엄히 징계조치 할 것.</p>	
건 축 과	<p><b>제 목 : 건축행정의 미흡한점</b></p> <p>(현황 및 문제점)</p> <p>①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고발, 지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건축물에 대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이 현 감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③준공기준의 재량권이 민원사항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음.</p> <p>(조 치)</p> <p>○위의 3개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건축물 준공시에는 담장설치를 필히 확인하고 준공처리토록 할 것.</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 축 과	<p><b>제 목 : 건축 착공계 지연</b></p> <p>(현황 및 문제점)  '91년도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1년이상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당산동1가 37 장대환의 15건에 대하여 건축주, 건축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착공연기 또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  *첨부 : 미착공자 명단 1부.  (조 치)  즉시 시정조치 할 것.</p>	
건 설 국 건설관리과	<p><b>제 목 : 노점상 단속 업무 소홀</b></p> <p>(현황 및 문제점)  영등포 신한은행앞 인도에서 각종 의류와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로 가판대에서는 판매 품목이 아닌 떡볶기를 판매하고 있어 주민 보건 위생상에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조 치)  영등포 전 구역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가판대에서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p>	
토 목 과	<p><b>제 목 : 건설공사비 절감</b></p> <p>(현황 및 문제점)  1.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교체함으로 3~4배의 비용을 사용함.  (콘크리트 : 8,000원/개, 화강암 : 30,000원/개)  2. 경계석 보도블럭을 일부만 교체, 이용가능한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건설비 낭비함.  (조 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석을 콘크리트제품으로 사용하고 이용가능한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교체하지 말고 사용불가능한 것만 교체할 것.</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토 목 과	<p>제 목 : 대림3동 776외 57번지에서 750번지 구간 소방도로  <u>개설건</u>                  (현황 및 문제점)                  소방도로 개설내역                  ①토지보상 54㎡ ②건물철거 48㎡ ③L=88㎡                  ④B=8m의 도로개설이 1992년 4월에 토지보상하고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과 병목현상으로 주민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보상 및 철거부분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auto;">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4m</td> <td style="width: 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m도로</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text-align: center;">8m도로</td> </tr> </table> <p>※ 첨부 : 현장사진 1매                  (조 치)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공사는 조기에 착수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p>			4m		8m도로		8m도로	
	4m								
8m도로		8m도로							
토 목 과	<p>제 목 : 보도·블럭 관리 보수에 관한 건  <u>개설건</u>                  (현황 및 문제점)                  대림지역 시흥대로변 보도·블럭 관리 보수를 영등포구 관내지만 동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해                  (조 치)                  금년까지는 동작구청에서 보수관리 해오고 있는 것을 '93년부터는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공원녹지과	<p>제 목 : 신길근린공원 본예산 5억을 책정하고 업무추진 불이행  <u>개설건</u>                  (현황 및 문제점)                  '92년도 예산 공원관리 33201(세항), 산출기초 시가 근린공원 조성 5억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감사시 확인결과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건설국(공원녹지과)에서 '92.</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공원녹지과	<p>7. 1일부터 도시정비국(주택과)로 예산을 이관하여 주택과에서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근무태도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p> <p>(조 치)</p> <p>예산집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후로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없도록 시정할 것.</p>	
도림2동	<p><u>제 목 : 감사자료 허위보고</u></p> <p>(현황 및 문제점)</p> <p>도림2동 소속 직원인 지방행정주사보 박진성은 도시정비국장이 공문으로 보고토록한 옥상 무허가 골프연습장 현황을 허위로 동장에게 복명하여 동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현장에 출장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복명한 사실</p> <p>※첨부 : 골프연습장 관련사진 4매.</p> <p>(조 치)</p> <p>앞으로 각종 현황 보고시에는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보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히 하여 담당자는 자성할 것.</p>	
신길4동	<p><u>제 목 : 감사자료 허위작성 제출</u></p> <p>(현황 및 문제점)</p> <p>신길4동장 허병문은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관급자재공사 수불대장을 허위 작성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음.</p> <p>(조 치)</p> <p>향후 모든 관계서류를 작성시 성실히 기록하여 차후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할 것.</p>	
주 택 과	<p><u>제 목 : 신길4동 재개발 환지 청산금 상환방법 변경 요구</u></p> <p>(현황 및 문제점)</p> <p>이윤중의원이 국회에 청원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되었다는 의안 제1269호 국회의장 명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공원녹지과	<p>당구청에서는 국회청원 결과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유를 물었더니 시에서 통보 받은 바 없다. 시에 확인하고, 국회에 확인하여 처리토록 조치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국회행정위원회의 주민청원을 반영하여 3년 거치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조건을 3년거치 12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결함.</p> <p>※첨부: 청원처리 결과 통지 공문 사본 1부 및 서울시 질의 회신공문 사본 1부.</p> <p>(건 의)</p> <p>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방안강구 요망.</p>	
도시정비과	<p><u>제 목: 네은싸인 광고 및 돌출간판 부착에 대한 개선사항</u></p> <p>(현황 및 문제점)</p> <p>건축물 설계시 광고물설치 장소를 상가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p> <p>(건 의)</p> <p>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없다면 제도개선 요망</p>	
도시정비과	<p><u>제 목: 불법 간판 단속에 대한 개선사항</u></p> <p>(현황 및 문제점)</p> <p>불법 간판은 간판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위반업자에게 철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요함</p> <p>(건 의)</p> <p>간판업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람.</p>	
건 축 과	<p><u>제 목: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의</u></p> <p>(현황 및 문제점)</p> <p>1983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구 관내 영세민 지역에는 792동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준공으로 남아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의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됨.</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건축과	<p>(건 의)</p> <p>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건물별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법규위반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또는 중과세를 부과하여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등을 상급관서에 건의하여 하루속히 영세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람.</p>	
지역교통과	<p><u>제 목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업무 개선사항</u></p> <p>(현황 및 문제점)</p> <p>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상습 과태료 체납자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자동차세 부과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할 것.</p> <p>(건 의)</p> <p>자동차세 부과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p>	
도시정비과	<p><u>제 목 :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일부 교체 요망</u></p> <p>(현황 및 문제점)</p> <p>세왕건설 대표이자 서울시의원인 김용일위원은 공과사를 구별할때 시의원인 공인에 우선함으로 당위원회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임.</p> <p>※첨부 : 속기록 사본 1부.</p> <p>(건 의)</p> <p>관계규정을 확인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교체토록 할 것.</p>	

7. 첨부서류(증빙자료) 게재생략